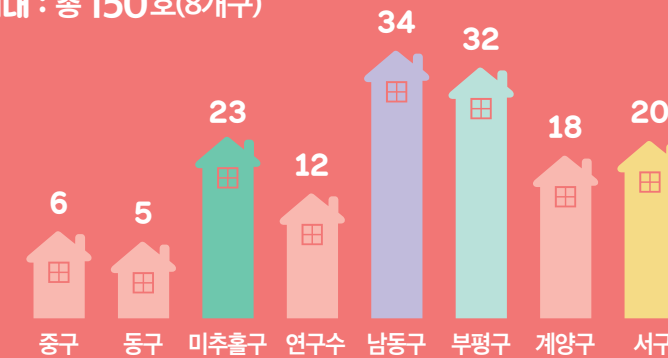




사업개요

- + 사업명 :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
- + 사업기간 : 2020. 03. ~ 2020. 12.
- + 지원내용 :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
- + 모집세대 : 총 150호(8개구)



+ 지원금액 : 500만원/호 범위

사업개요 | 지원대상 및 선정



지원대상 및 선정

- + 지원대상 선정기준
 -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(차상위 장애인)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%: 2,374,587원
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(8개구)
 - * 단,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임대인 동의 하 지원 가능
- + 지원제외기준
 - 주거급여 수급자(중위소득의 45% 이하)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은 자
 -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
 -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(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)
- + 신청방법
 -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지원범위

1. 현관

- + 출입문
 - 폭 확장 · 옆 여유공간 확보 · 레버형 손잡이 교체
 - 도어체크 설치 · 말굽(도어스토퍼) 설치
 - 이동 불편한 대상자, 65세이상 고령자 ▶ 리모컨 도어록으로 교체
 - 이동 불편한 대상자 ▶ 출입로 보수, 경사로 설치, 대문설치 (마당이 있는 경우 한함)

+ 바닥

- 미끄럼 방지 타일로 교체
- 바닥 높이차 제거
- 안전손잡이 설치

2. 거실

- 지체장애인(뇌병변), 휠체어사용, 65세이상고령자 ▶ 비디오폰 설치, 비디오폰 높이 조정
- LED 조명 교체 · 시각경보기 설치 · 비상연락장치 설치
- 바닥 높이차 제거 · 안전손잡이 설치

3. 주방

- 지체장애인(뇌병변), 휠체어사용, 65세이상고령자 ▶ 휠체어 의자 사용가능 싱크대설치, 취사용 가스밸브 높이조정, 가스자동차단밸브 설치
- 바닥 높이차 제거 · 안전손잡이 설치

4. 침실

- + 출입문
 - 폭 확장 · 옆 여유공간 확보 · 레버형 손잡이 교체
- + 바닥
 - 문턱 제거(문틀, 문짝 교체 포함)
 - 문턱 낮춤(문틀, 문짝 교체 포함)
 - LED 조명 교체 · 리모컨 작동 조명 교체
 - 비상연락장치 설치 · 안전손잡이 설치

5. 화장실

- + 출입문
 - 폭확장 · 옆 여유공간 확보 · 레버형 손잡이 교체
 - 문턱 제거(문틀, 문짝 교체 포함) · 문턱 낮춤(문틀, 문짝 교체 포함)
 - 개폐형식/방향 변경에 따른 교체 · 출입구 동작감지센서 설치
 - 욕조 높이조정 · 접이식 샤워의자 설치(욕조 없는 경우 한함)
 - 상하 이동가능 샤워기 설치 · 수건걸이 설치
 - 지체장애인(뇌병변), 휠체어사용자 ▶ 좌변기 옆 공간확보, 높낮이 조절 세면기설치
- 비상연락장치 설치 · 안전손잡이 설치

주거환경 개선

- 65세 이상 고령자 ▶ 주택조사 시 담당자 판단에 따라 지원

재래식화장실 개조

- 지체장애인(뇌병변)
- 휠체어사용

지원범위





2020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

